

발 간 등 록 번 호

연구조사-조사-1701

www.ableforum.com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2017. 7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요약 >

I. 서론

1. 조사 목적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권리구제 기능 이행실태 평가
- 법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판결분석
- 평가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차법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2. 조사 필요성

-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 장애인 인권 옹호자 그룹을 중심으로 장차법 실효성 문제 제기
- 장차법 실효성과 직결되는 차별시정기구 권리구제 활동,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판결 분석 필요성 제기

3. 조사 범위와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세부현황 분석(인권위 설립 ~ 2016년 말)
-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세부현황 분석(인권위 설립 ~ 2016년 말)
- 장차법 시행 이후,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활용 실태 파악
- 장차법 시행 전·후, 법원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 분석
- 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 장애인 관련 법체계 속 장차법 위상 분석

4. 조사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처리 통계자료, 장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분석

- 선행연구 문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판례 검색, 판례정보 청구를 통해 판례 수집. 분석
- 판례분석 및 결과에 대한 세미나 개최(외부 자문)
- 장차법 시행이후 판례현황 정리('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왕, 2017' 논문 요약)

II. 장차법과 실효성 관련 쟁점

1. 장차법 개요

1) 법제정 및 시행 의의

- 장애인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라는 사실을 당사자 스스로 국가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전달
- 국가와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부담해야할 의무를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 전환의 결과물인 동시에 이를 진전시키는 긍정적인 장치로 기능

2) 주요 내용과 개정 성과

-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에 비해 장애의 개념, 차별행위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자세하게 규정
 - ▶ 1989. 12. 30.부터 장애인복지법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였지만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하여 규정하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불과
- 인권위 차별시정권고 및 법무부의 시정명령, 법원의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등 권리구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
- 장차법 시행 이후,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강화. 시각장애인에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2014년)
 - ▶ 2010년 사법기관이 의사소통 장애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1차), 2012년 의사소통 장애 여부를 확인한 뒤에 조력을 신청할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 주도록 개정(2차)

3) 위상과 역할

- 한국의 장애 당사자 및 단체들은 장차법 입법운동 시기에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 이들이 그리는 장차법의 완전한 모습은 협약의 취지와 정신은 물론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계는 국내법 체계에서 장애인인권법 내지 기본법 위상을 장차법에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제기되는 실효성 쟁점

1) 실효성 제고 장치

-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법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수행. 정책개선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활용
- 장차법에 인권위 장애 차별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법무부장관 차별시정명령, 법원 손해배상 및 구제 기능 규정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미흡

-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각하 및 기각 비율은 높은 반면, 차별시정 권고율은 저조
 - ▶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총 10,967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이 접수. 53.2%는 각하, 36%는 기각 처리가 되어 총 진정 접수 건 중 10.8%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같은 기간 차별 시정권고 건수는 418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3.8%에 그치고 있음

3) 법무부장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사문화

- 장차법 시행 이후 이 제도가 실행된 사례는 장애를 이유로 면직된 피해자 복직명령(구미시시설관리공단, 2010년), 지하도에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명령(수원시, 2012년), 두 차례에 불과함
- 장차법 제43조 법무부장관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요건 완화 필요성 제기
 - ▶ 한편,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이 조항을 해석해 재량적 판단과 직권으로 차별시정명령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해소 의지 부족이 문제로 제기

4)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판결 실효성

- 장차법 제48조 2항은 판결 전이라도 차별행위가 충분히 소명된 경우, 피해자 임시구제, 가해자 차별행위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나, 법원 판결에서 활용 부족
- 제49조(차별행위) 차별행위의 '악의성' 충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너무 적어 차별예방 효과 미흡
 - ▶ 손해배상 규모가 대부분 300만 원 이하고, 패소(또는 일부승소) 경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들의 소송 유인력 부족

III.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활성화

1) 역할과 의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 조정, 조사 결과 차별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시정 권고를 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강제이행 가능성을 확보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관점에서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 장차법이 국내 환경에서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권고, 인식개선 교육 등에 활용

2) 사건처리 현황과 실효성 문제

-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구 분	진정 접수 건
장애 차별	10,973
인권침해(장애인복지시설)	187
인권침해(정신보건시설)	17,826

-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016. 12. 말 기준
- ▶ 장애인 차별진정 비율은 전체 차별진정의 약 46.8%를 차지하고 있음. 장차법 시행 전에는 15.3%에 불과했으나 이후에는 53.9%를 차지해 대폭 증가하였음
-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진정은 장차법 시행 전후로 각각 연평균 14건, 11.4건으로 소폭 하락했음
- ▶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은 장애차별 진정 건의 1.6배 이상이며, 2010년 이전에는 연평균 185건, 이후에는 2,309건으로 12배 이상 급증. 최근 3년 동안에는 연평균 3천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음

○ 진정사건 조사 비율

구 분	조사대상 비율
장애 차별	45.8
인권침해(장애인복지시설)	47.8
인권침해(정신보건시설)	36.7
평균	43.4

- ▶ 차별행위 조사비율 통계산출 기간은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침해 조사비율은 인권위 설립 이후
- ▶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형식상 각하 및 기각 처리되나 사실상 권리가 구제된 경우로, 조사대상, 구제비율에 포함
- ▶ 평균 56.6%의 진정 건은 각하 및 기각처리 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도 50%에 미치지 못함

○ 피해자 구제 비율

구 분	권리구제 비율
장애 차별	66.8
인권침해(장애인복지시설)	58.6
인권침해(정신보건시설)	31.1
평균	52.1

- ▶ 차별행위 구제비율 통계산출 기간은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침해 구제비율은 인권위 설립 이후
- ▶ 조사대상의 평균 52.1%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남.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구제율은 차별사건 구제율의 46.5%,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구제율의 53% 수준에 매우 저조함

○ 차별 시정권고율은 장차법 시행 전에는 접수된 890건 중 35건으로 3.93%, 시행 후에는 접수된 10,077건 중 383건으로 3.81%를 차지해 소폭 감소하였음

- ▶ 장차법 시행이 인권위 사건처리 관행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각하, 기각이지만 조사 과정 중에 진정 내용이 해결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장애계의 우려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조사대상과 권리구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개선방향

- 각하 및 기각 요건 강화와 정책개선 및 차별 시정권고 활성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선. 또는 장차법 제41조(준용규정)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화된 조사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체

관련조항	관련 내용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제32조 1항 4호 규정은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인권위가 의지가 없으면 단지 진정시점이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여지가 있음. 이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진정제기 시점 및 인권위 결정과 무관하게 각하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제44조 1항을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이행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개선 권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개선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구성을 개선해 차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정책권고, 시정권고 활성화
- 조사관 확충으로 증가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 진정 대응
 - ▶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 건이 13배 수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도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음. 반면, 2009년을 기점으로 인권위 조직과 인원은 20% 이상 축소되었음

2. 법무부장관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 활성화

1) 역할과 의의

- 법무부는 장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차별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은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시행령 제23조)’를 구성해 운영. 인권위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은 이의 권고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필요성 등을 심의
 - ▶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인권국장, 장애당사자 등 8명으로 구성
- 과태료는 차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차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2) 제도운영과 실효성 문제

- 장차법 시행 이후 단 두 차례 시행. 2010년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장애를 이유로 직권 면직된 장애인의 복직을 명령했고, 2012년에는 제3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시정명령을 내렸음
- 인권위가 공개하고 있는 주요 권고 151건 중, 2016년 말 기준으로 44건은 가해자가 수용하지 않았음(불수용 5건, 일부수용 24건, 검토 중 15건). 그 중 1건만이 법무부의 차별시정명령 대상이었음.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면서도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에서도 4건이 제외되었음
 - ▶ 인권위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252건의 시정권고 건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 시정명령이 한번도 활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차별시정명령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43조 개선 필요성 또는 법무부 장애차별개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됨

3) 개선방향

- 법무부장관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 요건 완화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 제43조 1항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선
- ▶ 시정 권고를 가해자가 불수용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의 전제조건으로 ‘피해자의 신청’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중복적인 피해자 의사 확인에 불과
- ▶ 한편, ‘정당한 사유’ 내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판단 재량권이 법무부에 있다는 점에서, 또한 피해자의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차별해소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3.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활성화

1) 역할과 의의

-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경우 손해배상, 차별행위 중지, 차별관행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 적극적 조치는 차별행위가 소멸이 된 경우에 판결 전이라도 가능
- 분쟁해결에 있어 가해자에게 차별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
- 권리구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이고, 손해배상은 물론 적극적 차별개선 조치까지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임

2) 장차법 시행 이후 장차법 관련 판례 현황

- 장차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선고된 장차법 관련 판결은 55건(민사/행정 소

총 40건, 형사소송 15건)이며, 법 시행을 기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민사	1	2	3	5	3	5	8	7	6	40
형사	0	1	0	1	0	1	3	6	3	15
계	1	3	3	6	3	6	11	13	9	55

○ 민사(행정)판결은 구제 조치에 관한 판결 14건,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27건, 그 밖의 판결 9건이 차지하고 있음

구분	인용	기각	각하	계	인용율
구제 조치	3	9	2	14	21.4%
손해배상	13	13	1	27	48.1%
기타	4	5	0	9	44.4%

▶ 장차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 이외의 사법·행정절차 관련 소송에서 장차법이 활용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이 하나의 범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손해배상과 기타 판결에 비하여 구제 조치의 인용률이 낮아, 법제정 당시 구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점과 대비됨

○ 민사(행정)사건 판결은 다양한 생활영역의 장애차별을 다루고 있음

차별 금지 영역	판결 수	사건 수
고용	7	5
교육	4	4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5	13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1	10
모·부성권, 성 등	0	0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2	2
기타	1	1
계	40	35

▶ 생활전반 영역에서 다양한 장애인 차별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어, 장차법 취지와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3건의 판결(11건의 사건)에서 19명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13명이 3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피해자의 소송 유인이 떨어지고, 가해자의 차별행위 개선에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손해배상 인용금액(원)	피해자 수
2600만 미만 ~ 1500만 이상	3
1500만 미만 ~ 500만 이상	3
300만 이하	13
계	19

- 형사판결에서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변론에서 장차법을 언급한 사건이 4건(관련 판결 4건), 피고인이 장차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사건이 5건(관련 판결 11건)이었음

분류1	분류2	사건
장애인이 피고인 사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이 쟁점이 된 사건	지적장애인 자백의 증거 능력 부인 사건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지 의무 위반 사건
피고인이 장차법을 위반한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	무면허 운전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강원도 원주시 시설사건
		경상북도 구미시 시설 사건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 사건	강원도 홍천군 시설 사건
		가평군 시설 사건
		개 사육장 사건

- ▶ 장애인이 피고인 4건의 사건 중 2건은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쟁점이 되었음
- ▶ 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에서 장애인 학대와 임금착취 사건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반면, 검찰이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를 활용해 기소한 것은 5건에 불과함
- ▶ 더구나 5건의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28명이었는데, 장차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는 없었으며,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죄판단과 양형에 장차법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명에 불과해 차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장차법 시행 전·후 판례 비교 분석

- 장차법 시행 이전 판례

구분	대표적 사례
위법성 판단기준	▶ 뇌병변 1급 장애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거절사건(2004년 선고)
	▶ 청계천 이동권 청구소송(2007년 선고)
한계	▶ 송실대 장애인 교육시설 접근권 사건 (2002년 선고)
	▶ 제1차 경남대 장애인 교육시설 접근권 사건(2008년 선고)
한계	일부 판사의 시혜적 관점에서 차별행위 인용, 법적 예측가능성 부족

- ▶ 뇌병변 1급 장애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거절사건에서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을 위법으로 판결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 위법성을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음

▶ 청계천 이동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8조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공공시설에의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적,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극적 판단을 내렸음

▶ 송실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대학이 장애인 학생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음

▶ 법원은 제1차 경남대 사건에서, 피고인 대학은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장차법 시행 이후 판례

구분		대표적 사례
특징	‘정당한 사유’에 비례 원칙과 같은 엄격한 기준 제시	▶ 에버랜드가 지적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사건(2015년 선고)
	‘편의제공 미이행’을 차별행위로 규정	▶ 시외버스 및 장거리 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 하라고 한 사건(2015년 선고)
	적극적 구제조치	▶ 에버랜드가 지적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사건(2015년 선고) ▶ 뇌병변 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6년 선고) ▶ 시외버스 및 장거리 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 하라고 한 사건(2015년 선고)
한계	▶ 형사사건 적용 한계(제49조) ▶ 차별개선 실효성이 부족한 손해배상 판결	

▶ 에버랜드가 지적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사건(2015년 선고)에서, 법원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 거부 조치는 지적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목적에서는 타당하다고 하여도 부분적인 제한이 아닌 일률적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즉,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에 비례원칙과 유사한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시외버스 및 장거리 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한 사건(2015년 선고)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 첫 판결로, 법원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차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 법원은 에버랜드 사건에서 신속한 차별개선을 위해, 차별이 해소되기 전까지 매일 일십만 원의 간접 강제금 지급을 명령하는 등, 세 차례 적극적 조치 판결을 내렸음
- ▶ 반면, 법원이 민사판결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피해자 소송 유인이 떨어지고, 형사판결에서 제49조(차별행위)가 독자적으로 유죄판단과 양형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 피해자 구제 한계 노출

4) 개선방향

○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제48조 2항) 확대

- ▶ 일종의 임시구제조치 또는 행정법상 가구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낮은 제도임. **차별피해자 입장에서 판결 전에 임시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적극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혜택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미친다는 면에서 대표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음**
- ▶ 법원은 내부세미나를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조치 판결의 의미를 홍보하고 법무부, 공익변호사 그룹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슈화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이 인정한 유용한 판단기준을 장차법에 명문화

제4조(차별행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하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보완)

- ▶ 타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선고되도록 유도

○ 제49조(차별행위) 악의성 충족요건 완화

제49조(차별행위)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삭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 장차법이 형사판결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제49조만으로 형사기소가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 차별 피해자 소송기금 마련

- ▶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소액으로 피해자는 소송을 기피하고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음. 차별 피해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필요성 제기
- ▶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를 보완해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 외에도 피해자 소송지원 근거를 마련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집단구제제도 도입

구분	고려사항
장애인단체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소송은 법률이 정한 단체가 다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임 ▶ 사업자의 특정행위 금지와 같은 보편적이고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구제에 한계 ▶ 반면,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서 소비자 분야보다는 단체소송이 활발할 수 있는 여건임
변형된 2단계 집단소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인정(차별행위 금지 또는 중지)선까지는 장애인단체에게도 원고적격을 부여하되,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개별 피해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형태 ▶ 소송규모로 인한 집단소송(opt-out)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징벌적손해배상의 효과가 있음 ▶ 장애인인권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가 소송을 주도하면 장애차별 피해자 소송참여가 용이

- ▶ 장애인 차별행위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적 분쟁의 1회적 해결 방식이 요구됨
-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50인 이상의 같은 피해자가 모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효력을 적용. 그러나 소제기에 따른 승소가 불확실한 반면 피해자가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은 많고 소송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려,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제기된 집단소송 건수는 9건에 불과
- ▶ 옵트-인(opt-in)방식의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재판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 등의 반발은 약하겠지만, 소송에 참가 하지 못한 피해자 구제는 불가
- ▶ 옵트-아웃(opt-out)방식의 집단소송은 판결효력의 범위를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모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 권리구제에 용이하고 불법행위의 반복억제와 예방효과가 있음. 다만 소송규모가 커져 소비자 분야로 확산을 우려한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이 예상

IV. 결론 및 제언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능 강화

-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 구성 개선
- 각하요건 완화 및 정책 및 시정권고 활성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선
- 조사관 확충으로 증가 하는 차별 진정 대응

2. 법무부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능 강화

-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 요건 완화로 제도 활성화

3.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활성화

- 적극적 구제조치(제48조 2항) 판결 확대로 권리구제 활성화
- 법원이 인정한 유용한 판단기준을 장차법에 명문화 해 타 사건에서도 인용 유도
- 제49조 차별의 악의성 충족 요건 완화
- 차별 피해자 소송(기금) 지원으로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
- 피해자 집단 구제제도 도입으로 차별예방 효과 제고

목 차

보고서 요약	1
I. 서론	1
1. 조사 목적	1
2. 조사 필요성	1
3. 조사 범위와 내용	2
4. 조사 방법	3
II. 장치법과 실효성 관련 쟁점	4
1. 장치법 개요	4
1) 법제정 및 시행 의의	4
2) 주요 내용과 개정 성과	5
3) 위상과 역할	7
2. 제기되는 실효성 쟁점	17
1) 실효성 제고 장치	17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미흡	17
3) 법무부장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18
4) 법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판결 실효성	19
5) 기타	19
III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23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활성화	23
1) 역할과 의의	23
2) 사건처리현황과 실효성 문제	23
3) 개선방향	30

2. 법무부장관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 활성화	32
1) 역할과 의의	32
2) 제도운영과 실효성 문제	32
3) 개선방향	41
3.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활성화	43
1) 역할과 의의	43
2) 장차법 시행 이후 장차법 관련 판례 현황	43
3) 장차법 시행전·후 판례 비교 분석	52
4) 개선방향	60
IV. 결론 및 제언	66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권고 활성화	66
2. 법무부장관 차별시정명령제도 활성화	66
3.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활성화	66
참고문헌	67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법률	68

1. 서론

1. 조사 목적

장차법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 장애인 인권 옹호자 그룹은 헌신적인 입법운동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표기) 제정 성과를 이루었다. 이 법은 다양한 일상생활 속 차별유형과 차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등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를 담고 있다.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이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있다는 의미다. 엄밀히 말하면 권리구제에 있었다. 장차법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시정권고 기능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정권고 이행은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장차법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권리구제 기능 이행 실태와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관련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조사 필요성

법 제정(2007. 4. 10.) 10주년이다. 입법을 주도했던 장애계는 ‘권리구제’에 주목하였고 이를 법률명에도 포함시켰다.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법규정이 충분치 못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생긴다. 그 결과 피해자는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법규정이 충분치 않으면 법을 만드는 국회를 찾아가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과 처벌을 결정하는 사법부에 가서 따질 일이다.

법 시행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대다수 차별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장애인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의 손해배상 및 권리

구제 판결이 장애차별 개선을 촉진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들의 권리구제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차법을 보다 촘촘하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3. 조사 범위와 내용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법 실효성을 둘러싼 쟁점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의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역할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세부현황을 분석하였다. 2001년 인권위 설립시기부터 2016년 말 기준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세부현황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관은 사실상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사건 모두를 다루기 때문이다. 장차법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추행 및 강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도 포함하고 있다. 차별유형에 사실상 폭행, 감금, 강간, 사기, 준사기, 횡령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 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인권위의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각하 및 기각 비율과 저조한 시정권고율은 장차법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차법 제정 당시 장애계는 인권위의 차별 시정권고 기능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시행 중이던 제도였고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차별개선 효과가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9년째인 지금도 장애차별 사건 대부분은 법무부나 법원이 아닌, 인권위에서 처리되고 있다. 인권위의 구제기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둘째,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활용 실태를 들여다보았다. 2008. 4. 11. 장차법 시행 이후 기간이다. 장차법 제정 당시 강제력 없는 인권위의 차별 시정권고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법 시행 9년 동안 이 제도를 단 두 차례 활용했을 뿐이다. 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가해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불수용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인권위 시정권고율이나 가해자의 권고수용률 영향에 따른 결과인지, 법무부의 차별개선 의지의 문제인지, 장차법의 관련 규정이 원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차법 관련 판례 현황을 정리하고 법시행 전·후 판결 분석을 시도했다. 법원의 구제기능은 법 제정 당시 장애계가 주목했던 구제수단이였다. 법무부의 차별시정명령 제도와 더불어 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인권위의 장애 차별 시정권고 실효성의 한계를 보완해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장차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입법 목적대로 법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차별개선 효과가 없다는 의견, 장차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악의성 충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4. 조사 방법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차별 피해자 구제기능을 평가하고 실효성 쟁점을 다루기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개한 사건처리 통계자료 및 보도자료, 장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선행연구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법원의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문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판례 검색 및 판례정보 청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판례를 수집하였다. 외부 법조인에 판례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대해 다수 법조인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수집과정에서 누락된 장차법 관련 판례현황은 최근 발간된 논문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왕, 2017’을 요약 정리하였다.

II. 장차법과 실효성 관련 쟁점

1. 장차법 개요

1) 법제정 및 시행 의의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입법을 추진하고 연대운동을 통해서 제정(2007. 4. 10.) 및 시행(2008. 4. 11.)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당연한 주체라는 사실을 당사자 스스로 국가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주지시킨 것이다.

국가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은 법과 제도, 정책, 관행 등을 포함한다. 이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장차법은 일반 법률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 데 부담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차법은 사회구성원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장애인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에 대한 국가의 기대를 법률로 표명하고 있다는 의의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 태도 변화요구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 관점이 아닌 법 준수를 요구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거나 최소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장차법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시혜가 아닌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 전환의 결과물인 동시에 이를 진전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해 법을 제정하였고, '시혜에서 인권으로' 장애 운동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담당 공무원들도 장애인을 보호대상이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2) 주요 내용과 개정 성과

장차법 제정 목적과 취지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의 주요 골자는 일상생활 전반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차별로 인해 평등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로 구성 되어 있다.

1989. 12. 30.부터 장애인복지법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였지만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하여 규정하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재왕, 2017). 장차법은 기존 법률에 비해 장애의 개념, 차별행위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대상을 장애인 당사자 외 보호자, 후견인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과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까지 확장하고, 금지하는 차별유형을 직접 차별 외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까지 확대하고 있다.

권리구제 장치에는 인권위 차별시정권고 및 법무부의 시정명령, 법원의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다. 장차법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인권위는 이미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계는 강제력이 없는 차별시정 권고가 차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계는 입법운동 과정에서 차별시정 및 명령기능을 인권위나 법무부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고, 법원의 구제역할에 주목했다.

현행 장차법은 총칙(제1장), 차별금지(제2장),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제3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제4장), 손해배상·입증책임 등(제5장), 벌칙(제6장) 등 총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장차법 구성과 주요내용

장	절	조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제02조 장애와 장애인 제03조 정의

		제04조 차별행위 제05조 차별판단 제06조 차별금지 제0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0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0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차별 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절 가족·가정·복지 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제4장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제39조 직권조사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권고의 통보 제43조 시정명령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 법원의 구제 조치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제50조 과태료

법 시행 후, 9년 동안 이루어진 개정작업은 타법 개정에 의한 소극적 개정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6조 6항이 두 차례 개정하였다. 2010년(1차) 사법기관이 의사소통 장애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하였고 2012년(2차) 의사소통 장애 여부를 확인한 뒤에 조력을 신청할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 주도록 개정하였다

두 차례 개정은 모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을 하지 못해 아무런 편의 제공 없이 수사를 받았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김재왕, 2017). 그 외 2014년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 한 개정이 있었다.

2) 위상과 역할

장차법은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취지 및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한국의 장애 당사자 및 단체들은 장차법 입법운동 시기에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권리협약 기본이념인 당사자주의, 자립생활, 인권보장 등의 이슈가 장차법 내용과 국내 장애인 운동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차법 입법 취지와 목적이 온전히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제고에 있지 않더라도, 장애 당사자 및 단체, 장애인 인권 옹호자들이 그리는 장차법의 완전한 모습은 협약의 취지와 정신은 물론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계는 국내 장애관련 법체계에서 장애인인권법 내지 기본법 위상을 장차법에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률 제정 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8조(차별금지 등)에서 장애인 인권을 다루고 의료, 교육, 직업, 주거, 문화, 장애수당, 자립생활 지원 등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표>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8조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차법이 제정된 현행법 체계에서는 장차법이 장애인 인권보장규범으로서 기본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외의 개별법들은 두 법을 축으로 하면서 개별영역에서 특별법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1) 국제인권규범과의 관계

장애인권리협약은 대다수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 등 평등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장치다. 제정 취지가 장애인 개인의 재활이나 시혜적인 복지차원이 아니라 자유권과 사회권을 향유하는 정당한 주체로 장애인을 규정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장전과 주요 UN인권협약, 장애를 특정한 국제인권규범 취지와 내용을 협약의 전문, 제1절 총칙, 제2절 실제적 조항, 제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제4절 절차적 규정에 통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국제연합(UN) 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1948)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권리협약 이전에 UN이 채택한 주요 인권규범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196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venant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198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이 있다.

비록 권리의 주체로 장애인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에서 위 인권규범들이 장애인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근거임을 밝히고 이를 실제적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탄생 배경은 주요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장애인들이 충분히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으며, 그 목적은 편의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이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해 약속하고 그 이행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협약 제정 전에도 장애인 권리를 특정한 국제인권규범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지적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 UN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1982), 장애인 기회평등을 위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이다. 하지만 국가의 이행상황이 UN인권기구에 보고되고 평가받는 시스템이 아닌 선언수준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권리협약 전문은 25개 각 호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은 선언적 형식이지만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지닌다. 나머지는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 일반적인 원칙 외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권리 보호를 다루고 있다. 실체적 조항은 사회권 및 자유권 영역 권리를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문과 별도로 18개 조항의 선택의정서가 있다.

<표> 장애인권리협약 구성과 주요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전문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되었으며,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을 선언적 형식으로 구성
1절	총론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1조), 정의(2조), 일반원칙(3조), 일반의무(4조), 평등과 차별금지(5조), 장애여성(6조), 장애아동(7조), 인식제고(8조)
2절	실체적 조항	접근성(9조), 생명권(10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비상상태(11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12조), 사법접근(13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14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로부터 자유(15조), 착취·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17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18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19조), 개인이동(20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21조), 사생활 존중(22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23조), 교육(24조), 건강(25조), 득활과 재활(26조), 노동과 고용(27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28조), 정치와 공적생활참여(29조), 문화생활·레크레이션·레저·스포츠 참여(30조), 통계와 자료수집(31조), 국제협력(32조)
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국내이행과 모니터링(33조), 장애인권리위원회(34조), 당사국 보고(35조), 보고서 심사(36조), 당사국과 위원회간의 협력(37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38조), 위원회 보고서(39조), 당사국 회의(40조)
4절	절차적 규정	기탁(41조), 서명(42조), 기속적 동의(43조), 지역통합기구(44조), 발효(45조), 유보(46조), 개정(47조), 협약의 폐기(48조), 접근가능한 형식(49조), 정본(50조)

우리나라는 2009. 1. 10. 건강보험과 국내법이 생명보험 약관이 장애인 차별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는 제25조(건강)와 개인진정 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표> 장차법의 장애인권리협약 수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제1장 총칙		전문, 1절(총론)의 목적(1조), 일반원칙(3조), 일반의무(4조), 평등과 차별금지(5조), 인식제고(8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19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17조)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노동과 고용(27조), 사생활 존중(22조). 접근성(9조)	평등과 차별금지(5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28조), 통계와 자료수집(31조)
	제2절 교육	교육(24조). 접근성(9조)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개인 이동(20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21조), 사생활 존중(22조). 문화생활·레크레이션·레저·스포츠 참여(30조). 접근성(9조)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법 앞의 동등한 인정(12조), 사법 접근성(13조), 생명권(10조), 정치와 공적생활참여(29조), 접근성(9조)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개인의 자유와 안전(14조)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개인의 자유와 안전(14조), 착취·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23조), 건강(25조), 득활과 재활(26조)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여성장애인(6조), 장애아동(7조)	
제4장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국내이행과 모니터링(33조), 장애인권리위원회(34조)	

장애인권리협약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은 물론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국제사회가 선언하고 실천을 약속한 인권규범 가치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차법은 그 취지와 목적이 온전히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에 있지 않더라도 법 제정을 주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 장애인권리협약 정신과 내용을 수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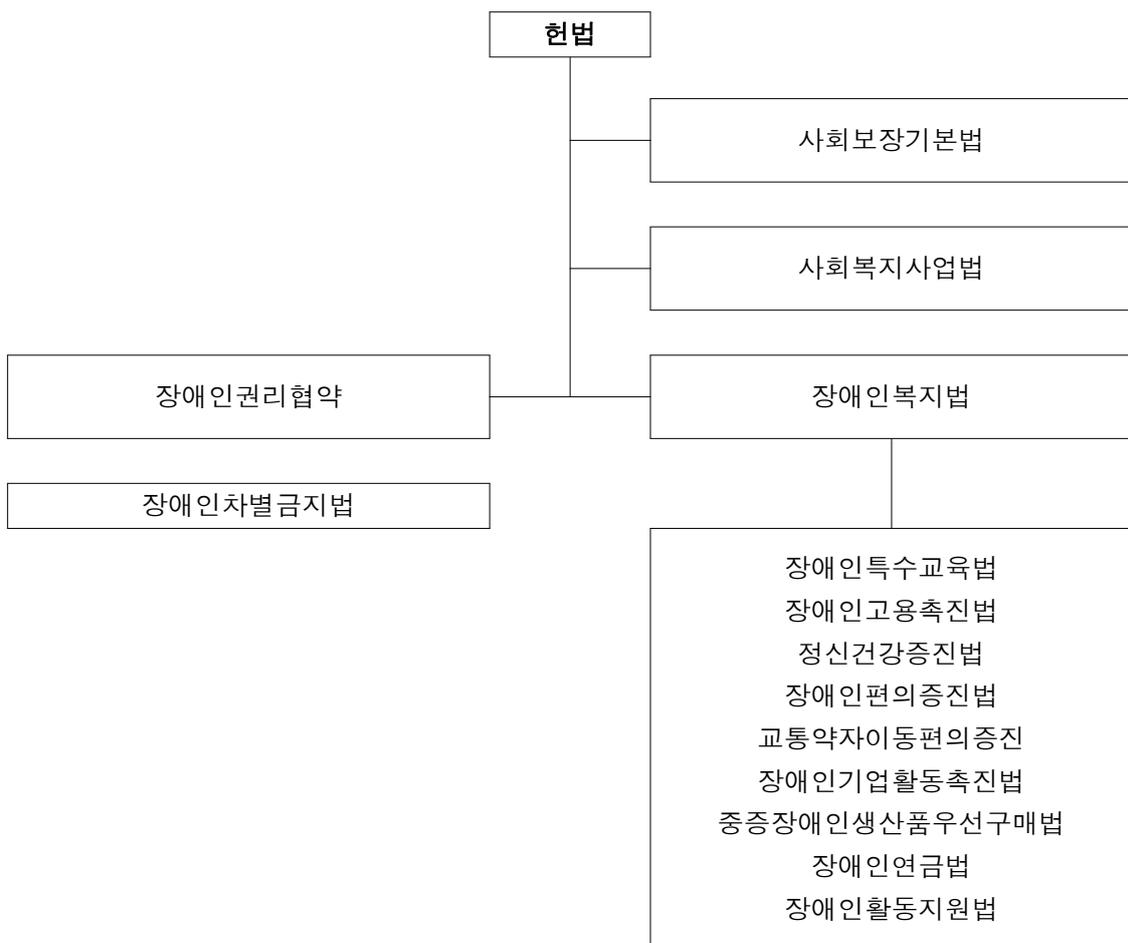
장차법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권리협약이 실제적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권리를 수렴하고 있다. 다만 장애 개념의 진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

는 협약 전문(마항)과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요인, 즉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위험상황과 인도적 비상상태(11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로부터 자유(15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18조) 등의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뿐이다.

(2) 국내 장애 관련법 체계에서 위상과 역할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반법에 해당하고, 그 외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특정 영역과 대상에 한정해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장애인 관련 국내 법체계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관점이다.

<표> 장애관련 법체계¹⁾



1)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 자료집 29p, 일부수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주거약자지원법
 발달장애인지원법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보조기기법
 한국수화언어법

법체계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 제정 과정이 갖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정되기 보다는 2005년 이후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계 요구를 대변하고,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슈별, 법률간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률 19개 중 14개가 장애 당사자 의원들 활동이 시작된 2005년 이후에 제정되었다.

<표> 장애 관련 현행법률 현황

법률명	제정 연도	법의 목적	주무부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1977)	2007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1989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2000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등에 관한 법률, 1990)		하는 것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1995)	2016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
장애인·임산부·노 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 지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 과)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2005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 원과)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장애인의 권리에	2009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관한 협약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	
장애인연금법	2010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장애아동복지지원 법	2011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기획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한국수화언어법	2015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법	2015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현행 장애관련 국내법 체계에서 장차법의 실질적 위상은 모든 장애 관련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차별, 복지서비스, 특정 이슈 모두가 포함된다)가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평등권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상위 법률 위상을 갖고 있다²⁾.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권리 향유를 위한 평등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장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애인 인권 보장을 기본 틀로 하여 법체계를 이해할 때, 장차법은 여러 장애 관련 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관련법의 기본법이면서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행 국내 장애인 법 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최상위 법으로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1970년에 제정된 일본의 장애인기본법 경우 장애인 인권, 자립생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등 종합적 시책을 다루고 있다. 국내 법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2. 제기되는 실효성 쟁점

1) 실효성 제고 장치

장차법 제정 10년 째를 맞이하고 있다. 법제정과 시행 자체가 갖는 긍정적 요소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필요성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법 실효성 제고 필요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개선하고 차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을 구제하는 데, 장차법이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법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수행. 정책개선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검토 일환이다. 장차법은 인권위 장애 차별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법무부장관 차별시정명령, 법원 손해배상 및 권리구제 기능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차별 받은 장애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사실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조사 결과 차별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법무부장관(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차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경우 손해배상, 차별행위 중지, 차별관행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손해배상 산정 시, 가해자에게 차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미흡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 11. 25~2016. 12. 31)을 보면, 장애차별 진정은 전체 차별 진정 접수 건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 전 장애관련 진정 접수 비중은 15% 수준이었다. 차별진정 건수는 장차법 시행 전 월평균 8.5건에서 이후에는 1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문제는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 각하 및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진정 대부분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사결과 차별이 아니거나 진정사실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이후 총 10,967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는데, 53.2%는 각하, 36%는 기각되어 총 진정 접수 건 중 10.8%만이 권리구제 대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차별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를 포함한 전체 차별 진정 건 중 구제 대상 비율도 1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차별 시정권고(인용)율은 저조하다. 같은 기간 차별 시정권고 건수는 418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3.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가 인권위 차별 시정권고에 대한 가해자의 수용 여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조한 시정권고율이 법무부 장애차별 시정명령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3) 법무부장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사문화

장차법 시행 이후 이 제도가 실행된 사례는 장애를 이유로 면직된 피해자 복직명령(구미시시설관리공단, 2010년), 지하도에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명령(수원시, 2012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장애계는 이를 인권위의 저조한 차별시정 권고율과 연계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동시에 장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장애인차별시정명령 활용 요건 완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1항 규정 중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이 차별시정명령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표> 장차법 제43조(시정명령) 규정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반면, 위 법규정은 법무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경우, 재량적 판단과 직권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장애차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4)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판결 실효성

법제정 당시 장애계는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주목하였다. 특히 판결 전이라도 차별행위가 충분히 소명된 경우, 피해자 임시구제, 가해자 차별행위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구제조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활용사례가 많지 않다.

법원의 장애차별 피해자 구제판결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제49조(차별행위) 조항이다. 차별행위에 '악의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악의성 충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법원 판결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2항의 '전부'를 삭제해 악의성 충족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표>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또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너무 적어, 차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소송 유인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단체소송 같은 절차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5) 기타

장차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법률 개정 논의는 법제정 당시 미흡했던 점

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틈새를 매워 장차법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는 그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슈를 조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장애계 장차법 개정 의견 요약

구분	개정이유 및 방향	비고
제1조 (목적)	‘장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차별을 한 경우, 금지 대상으로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 외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제1조)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장차법은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가 있음. 따라서 사회적 환경 및 장벽과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모델’로 장애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3조 (정의)	(5호)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제2조)상 사용자 정의에서 제외되어 의무의 수범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3조 (정의)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0조에서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30조 제5항 다호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명시하고 있음. 반면, 장차법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10호) ‘여행, 관광, 레저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조항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제 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혹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 관련 조항을 함께 추가
제3조 (정의)	(1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추가할 필	

	요가 있음	
제4조 (차별행위)	(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개념에 물리적 수단 외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해 공공정책의 차별인지적 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차별금지교육 및 장애인인권교육 추가로 정책의 수직적 일관성 확보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항)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조력인과 같은 정당한 편의 내용을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권리협약(제6조)은 당사국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제1항)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 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제2항)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강제 및 배제금지(제2항), 사용자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3항) 등이 있음 (1항)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에 관한 내용은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 바, 직장보육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을 고용조항에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음	모·부성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29조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음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장애인권리협약(제9조)은 당사국은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 규정해 정보통신 환경변화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대상을 웹사이트 외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장차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제26조	(3항)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관한 차별	

<p>(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금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1) 허가, 신고, 인가 등 절차’를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절차 전체로 확대할 필요 있음</p> <p>(6항)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사사법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법절차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p> <p>(추가) 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상황과 인도적 비상상태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p>	
<p>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p>	<p>(추가)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의 내용을 반영해 장애여성이 마주하는 다중차별 등을 다루고 장애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p>	
<p>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p>	<p>(1항) 정신 장애인들이 겪는 특수한 차별과 그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p>	
<p>제43조 (시정명령)</p>	<p>(1항)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시정명령의 요건 중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p>	
<p>제46조 (손해배상)</p>	<p>(추가)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차별행위 개선을 유도하거나 소송을 유인하기에는 소액에 해당되어 법 실효성 및 재발방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p>	
<p>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p>	<p>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관할이 행정법원인지 민사법원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p>	
<p>제49조 (차별행위)</p>	<p>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처벌요건을 완화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차별의 고의성·지속성 및 반복성·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함. ‘전부’를 삭제</p>	

Ⅲ.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활성화

1) 역할과 의의

장차법 규정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 결과 차별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법무부의 강제이행 가능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관점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국내 이행을 장려할 수 있다. 일상적인 모니터링 관점에서는 장차법이 국내 환경에서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권고, 인식개선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사건처리 현황과 실효성 문제

(1) 차별행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 12월 말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은 23,413건에 이른다. 그 중 장애차별 건은 10,973건으로 약 46.8%를 차지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 전에는 전체 차별 사건 4,269건 중에 장애 관련 사건은 653건으로 15.3%에 불과했다. 반면 장차법 시행 이후에는 전체 차별 사건 19,141건 중에 장애 관련 사건은 10,320건으로 53.9%를 차지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애차별 진정이 급증한 것이 장차법 입법운동, 제정, 시행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의식 향상이 이유라면 그자체로 장차법이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장애차별 진정 건수가 법 시행 이후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지 않음은 장애차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³⁾.

3) 아래 표에 따르면 2011년 월평균 73.8건으로 줄어들었을 뿐 2010년부터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6년에는 월평균 124.3건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연도별 원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⁴⁾

단위: 건

구분	총	장차법 시행('08.4.11) 이전										장차법 시행('08.4.11) 이후									
		소계	'01	'02	'03	'04	'05	'06	'07	'08	소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접수건	연	10,973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0,320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6	1,492
	월평균	60.3	10	6.5	1.7	1.5	4.5	10.1	9.7	21.3	16.5	93.2	67.2	60.4	141.3	73.8	111.6	109.3	94.9	95.5	124.3

장차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10,077건 중 각하 및 기각 처리된 것은 9,273건으로 약 92%(각하-53.7%, 기각-38.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기각 건 중 39.6%(1,530건)는 차별이 아니거나 진정사실과 달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60.4%(2,335건)는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로, 권리구제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표>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6.12.31.)⁵⁾

(단위: 건, %)

처리건수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10,077	4,608	3,07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구성비 (%)	100.0	100.0	100.0	12.4	0.2	11.5	75.9				
		66.8					33.2				
		45.8							53.4	0.3	0.5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4)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2017.4) 자료집, 83p

5) 위 자료집 85p

조사 중 해결(기각)을 구제대상으로 분류하면 조사대상은 전체 접수 건의 45.8%이며, 권리구제 비율은 조사대상(4,608건)의 66.8%(3,078건)로 나타나고 있다. 구제 유형별 분포는 권고 383건(12.4%), 조정성립 5건(0.2%), 합의종결 355건(11.5%), 조사 중 해결(기각) 2,335건(75.9%)이다. 시정권고율만 장차법 시행 전·후로 비교하면, 시행 전에는 접수된 890건 중 35건으로 3.93%, 시행 후에는 접수된 10,077건 중 383건으로 3.81%를 차지해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는 연평균 14건이 접수되었고, 이후에는 연평균 11.4건이 접수되었다.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과 비교해보면, 장차법 시행이후 차별진정 건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진정 건은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진정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이 67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강제수용과 인격권 침해가 뒤를 잇고 있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폭행과 강제수용, 괴롭힘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 접수 현황⁶⁾

(단위: 건)

분류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인격권 침해				4		3	1		1		2	2	3		3	19
의료조치 미흡				1	2		1					1	1			6
불법/강제 수용	1	1		6	6	7	9	1	1				1		3	36
폭행/가혹 행위		3	3	4	8	7	15	1			2	1	8	3	12	67
외부교통권 제한										1					3	4
강제노동			1	3		1	3							1		9
시설/환경			1	5	3	1									3	13
퇴원요청						3	2			1					1	7
기타				4	2	4	6	1	1				3	1	4	26
합계	1	4	5	27	21	26	37	3	3	2	4	4	16	5	29	187

6) 해당 통계 및 이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관련 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하였다. (2017. 4)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세부처리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182건 중, 135건(74.2%)이 각하 및 기각 처리되었다. 각하가 54.4%, 기각이 19.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각하 및 기각 처리 건 중 5.2%는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로, 권리구제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중 해결(기각, 각하)을 구제대상으로 분류하면, 조사대상 비율은 182건 중 87건으로 47.8%, 권리구제 비율은 87건 중 51건으로 58.6%로 나타나 차별사건 66.8%에 비해 떨어진다. 구제유형별 분포는 법률구조 1건 (2%), 고발 및 징계 권고 19건 (37.2%), 구제조치 권고 21건(41.1%), 합의종결 3건(6%), 조사 중 해결(기각, 각하) 7건(13.7%)이다.

<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의결결과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조사 진행	합 계
조사중 해결-각하										1				4			5
조사중 해결-기각													1	1			2
합의종결											1	1		1			3
각하	2	6	5	5	16	16	10	3		2	2	11	2	11	5		94
이송													1				1
기각	1		2	4	5	13	7		1						2		34
구제조치 권고			1	1		15							1	2	1		21
고발 및 징계권고				11	1							4		3			19
법률구조				1													1
조사중																2	2
합계	3	6	8	22	22	44	17	3	1	3	3	16	5	22	8	2	182

(3)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정신보건시설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은 17,826건으로 비슷한 기간 장애차별로 인한 진정 건 10,973건의 1.6배를 넘어서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연평균 185건이

접수되던 것이 이후에는 2,309건으로 12배 이상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연평균 3천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차별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 등 당사자들의 인권의식이 확산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증가추세를 볼 때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내릴 수 있다.

<표>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인격권 침해				2	5	8	15	18	6	26	46	47	63	122	70	132	560
의료조치 미흡			1	3	9	13	16	22	12	53	66	72	95	148	151	180	841
불법/강제 수용	1	8	23	64	113	117	261	240	117	749	785	1,052	1,439	2,014	1,979	1,638	10,600
폭행/가혹행위	1	4	7	24	30	39	61	45	30	208	240	266	357	332	273	256	2,173
외부교통권 제한			1	2	8	5	20	23	16	114	123	195	232	224	227	224	1,414
강제노동				1	2	0	4	6	6	29	13	43	51	30	31	30	246
시설/환경		2	3	11	25	23	27	17	9	29	36	48	69	64	59	99	521
퇴원요청						1	5	47	15	60	122	144	111	127	245	185	1,062
기타			3	8	3	12	24	20	1	11	21	48	46	60	41	111	409
소계	2	14	38	115	195	218	433	438	212	1,279	1,452	1,915	2,463	3,121	3,076	2,855	17,826

진정 분야별로 보면, 불법강제수용이 10,600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5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퇴원요청 1,062건을 더하면 11,662건으로 65.4%에 달하고 있어 자의입원 비중이 낮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폭행 및 가혹행위 비중이 12.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교통권 제한도 1,414건으로 7.9%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인들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매우 취약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정신보건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는 같은 기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 건의 100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 5월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다수가 퇴원하게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고려하면 그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의결결과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조사중	합계
조사중해결-각하											63	65	104	165	232	27		656
조사중해결-기각											25	13	7	13	11	3		72
조사중지			3	4	4	4	12		9	1	4	3	5	2	5	11		67
합의종결			2	2		1		8	38	81	61	150	124	155	65	7		694
각하	4	22	33	76	62	136	205	129	663	824	1,258	1,535	1,977	2,101	2,020	179		11,224
조사중 각하												1	7	1	4			13
이송		2	1		3	14	5		11	1	2	2	1	9	3			54
기각	1	6	42	69	64	120	264	141	321	331	470	596	636	622	602	96		4,381
수사의뢰											2		1	2		1		6
조정성립															1			1
구제조치 권고			1	26	13	23	42	16	67	44	74	50	33	74	60	7		530
고발 및 징계권고			2	2	4	8	11	1	1	3		2	14	5	18	5		76
법률구조													1		1			2
조사중																	50	50
소계	5	30	84	179	150	306	539	295	1,110	1,285	1,959	2,417	2,910	3,149	3,022	336	50	17,826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17,826 건의 91.7%인 16,346건이 각하 및 기각 처리되었다. 각하는 66.7%, 기각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각하 및 기각 처리 건 중 4%인 728건은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로, 권리구제 분야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중 해결(기각, 각하)을 구제대상으로 분류하면, 조사대상 비율은 17,826건 중 6,541건으로 36.7%, 권리구제 비율은 6,541건 중 2,037건으로 31.1%로 나타났다. 구제유형별 분포는 법률구조 2건, 고발 및 징계권고 76건(3.7%), 구제조치 권고 530건(26%), 조정성립 1건, 수사의뢰 6건, 합의종결 694건(34%), 조사중 해결(각하, 기각) 728건(35.7%)이다.

(4) 진정유형별 사건처리 비교

인권위의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 진정 및 처리 결과를 토대로, 접수된 진정 건 중 인권위가 조사한 건의 비중이 평균 43.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비중이 제일 높지만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비중은 36.7%로 가장 낮다.

<표> 각 사건별 조사대상 비율

(단위: %)

구 분	조사대상 비율
장애 차별	45.8
인권침해(장애인복지시설)	47.8
인권침해(정신보건시설)	36.7
평균	43.4

주) 차별행위 조사대상 통계산출 기간은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침해 조사대상은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의 피해자 권리구제 비율을 보면,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율은 차별사건 구제율의 46.5%,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구제율의 5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조사비중이나 권리구제 비율은 가장 낮다.

<표> 각 사건별 권리구제 비율

(단위: %)

구 분	권리구제 비율
장애 차별	66.8
인권침해(장애인복지시설)	58.6
인권침해(정신보건시설)	31.1
평균	52.1

주) 차별행위 구제비율 통계산출 기간은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침해 구제비율은 인권위 설립 이후

한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각하, 기각이지만 조사 중에 진정 내용이 해결된 경우도 많아, 장애계의 우려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조사대상과 권리구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개선방향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선

장차법 시행이후 장애차별 진정 건이 급증한 것을 두고, 장차법이 우리사회 장애차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차법이 장애인 당사자 권리의식 향상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장차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을 권고한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35건=>383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장차법 전·후 차별 시정권고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장차법 시행이 인권위 사건처리 관행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장차법 제41조(준용규정)에 따라 “차별 진정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애초에 장차법 시행이 인권위 차별사건 처리 관행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인권위의 장애차별 시정 권고율 제고는 장차법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선과 연계하거나, 사건처리 방법을 장차법에 근거하도록 장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항 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 처리하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인권위가 의지가 없으면 단지 진정시점이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진정제기 시점 및 인권위 결정과 무관하게 각하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4호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1항에서 위원회의 구제조치 이행, 정책개선 등의 권고를 임의규정으로 마련해 놓았다.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이행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개선 권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1항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 구성 개선

인권위의 저조한 차별시정 권고율이 전체 위원은 물론, 장애 차별 이슈를 다루고 있는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법조계 출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 감수성이 결여된 채,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다.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장애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당사자 입장에서 사건이 다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정권고율을 제고하고, 장차법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3) 조사관 확충

장차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권위의 조직과 인원 규모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 건이 13배 수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도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반면, 2009년을 기점으로 인권위 조직과 인원은 20% 이상 축소되었다. 증가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 진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사관 확충이 요구된다.

2. 법무부장관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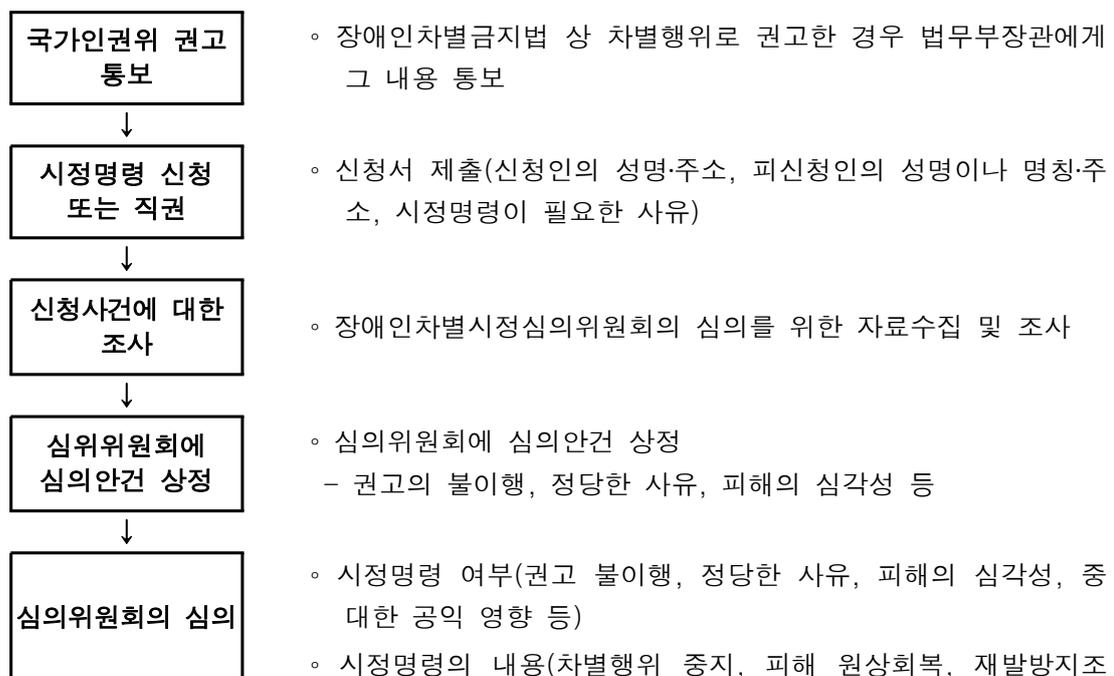
1) 역할과 의의

법무부는 장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차별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차별에 따른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차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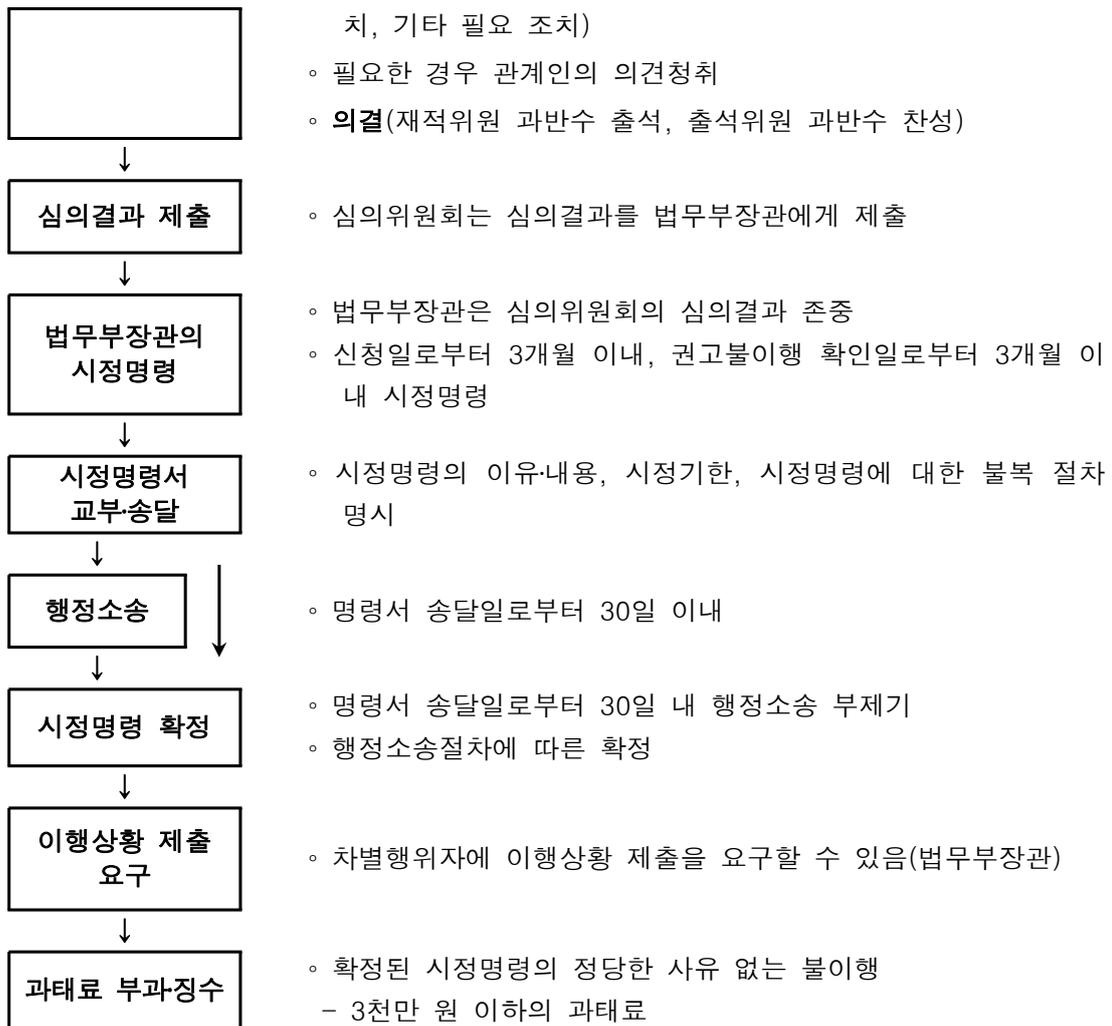
2) 제도운영과 실효성 문제

시정명령은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시행령 제 23조)’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인권위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은 이의 권고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필요성 등을 심의한다.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인권국장, 장애인 당사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업무 흐름도⁷⁾



7) 법무부 보도자료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최초 시행’



이 제도는 장차법 시행 이후, 단 두 차례 시행되었다. 2010년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 사장을 상대로, 장애를 이유로 직권 면직된 장애인 복직을 명령했고, 2012년에는 제3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이동·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도상가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표> 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 활용 사례⁸⁾

<p>사례 1. 장애를 이유로 직권 면직된 장애인의 복직 명령(2010, 구미시시설관리공단)</p> <p><조치></p>

8) 법무부 보도자료 수정편집

<p>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을 명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인 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 하였음</p> <p><주요 내용 및 판단 근거>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잔 존 노동능력에 적합한 담당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 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신청인의 복직이 필요하다고 판단</p> <p>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를 이유로 손씨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업무적합성 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담당 업무 조정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손씨가 직권면직되어 약 1년 8개월간 실직상태에 있게 됨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음</p> <p>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 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사례 2. 수원역 앞 지하도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토록 시정명령 (2012, 수원시장)</p>
<p><조치> 수원시장은 180일 이내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하였음</p> <p><주요 내용 및 판단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행정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 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p> <p>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 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수원시장은 2010. 7. 16. 인권위 권고 결정전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p>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권고 이행을 지연한 바 있으며, 현재 2013년 상반기 지하도 개보수 기간에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권고확정 후 약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법무부의 장애차별시정명령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불이행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말 기준,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는 383건이었다. 이 중 차별시정명령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a.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b.피해자가 다수, 반복적 차별행위,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d.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상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게다가 모두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인권위가 공개하고 있는 주요 권고 151건 중, 2016년 말 기준으로 44건은 가해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불수용 5건, 일부수용 24건, 검토중 15건이다.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면서도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에서도 4건이 제외되었다. 인권위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252건의 시정권고건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 한번도 활용되지 않은 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표> 장애차별 진정사건 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중 ‘수용’ 외 현황⁹⁾

분야	사건명 (사건번호)	수용 여부	조 치 내 용	의결 일자
고용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 0945)	불수용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 면직 일부터 복직 일 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 게 지급할 것을 권고(법무부 시정명령 수용)	2009. 8.28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 0490)	불수용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 4.9.

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자료집(2017.4) 인권위가 공개하고 있는 주요 권고 151개 중 발췌

	뇌병변 장애인 공무원 시험에서 편의 미제공 (15진정0627300)	일부 수용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 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 8.20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에서의 차별 (16-진정-0542500)	검토중	손가락 장애를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운전원 채용 및 모집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하여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6. 11.14
교육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15진정0280500)	일부 이행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015. 9.18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일부 수용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까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 7.23.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일부 수용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 9.10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일부 수용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 10.20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일부 수용		2010.10.20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일부 수용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번영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5.17.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2건 일부 수용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5.1.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 침해 (12진정0012500)	불수용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11.2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월정액 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일부 수용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 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00구	2013.1.29

			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일부 수용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 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 11.12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검토중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의 중앙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 3.30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일부 수용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련하여 0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 7.23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6진정0338800)	검토중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체크카드와 동봉하여 발급하는 안내문을 발급함에 있어서 각장애인이 안내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본에 인쇄물 음성 변환바코드 생성 처리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본 내용을 점자 자료화 자료 또는 녹음한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산하기관의 점자 체크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	2016. 21.28

		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 내 이동권 제한 (15진정0919600)	검토중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이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 12.28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차별 (15진정0349900)	검토중	00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함.	2016. 10.5
관광객 수송차량 휠체어 승강설비 미장착 (16진정0275500)	검토중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000자연휴양림의 관광객 수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 설비 장착 등의 편의제공 방안 마련. 00군수는 향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시 장애인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2016. 12.7
웹 접근성 이용시 시각장애인 차별 (16진정0746800)	검토중	피진정인에게 웹사이트 '00000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서비스의 보안문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	2016. 11.14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775200)	검토중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6. 12.7
장애를 이유로 한 차량렌탈	검토중	피진정인은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인 좌측페달을 구비할 것과 진정인등 장애인 운전자가 요청해 올 경우 차량을 대여해 줄 것을 권고	2016. 12.28

	거부 (16진정069 2300)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철거 (16진정079 5600)	검토중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표 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하기 바람	2016. 11.14
	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15진정097 5900)	검토중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 7.22.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간식비 갈취 (15진정089 0200)	검토중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연금 및 생계급여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 을 권고. 00군수에게, 가) 피진정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나) 수급관리자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6. 11.1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6진정026 7000)	검토중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 람. 00광역시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 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00시립미술 관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바람	2016. 10.5
	장애인 시설 이전 강요 (16진정079 6200)	검토중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시설 이전을 강요 하는 공문 발송 및 승강기내 공고문 부착행위를 중지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것. 00시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내 장 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 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16. 12.28
사법행 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 0874 등 2건	불수용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 8.31.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 7800 등 4건)	일부 수용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권고.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 5.4
괴롭힘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 8000)	일부 수용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 2.14
	장애인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061 0400)	검토중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체험홈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00시장에게, 피진정인과 진정 외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 11.19

3) 개선방향

차별시정명령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제43조 1항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정권고를 가해자가 불수용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의 전제조건으로 피해자 신청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중복적인 피해자 의사 확인에 불과하다. 한편, '정당한 사유' 내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판단 재량권이 법무부에 있다는 점에서, 또한 피해자의 신청이 없이 직

권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차별해소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장차법 제43조(시정명령) 규정 중 저해요소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3. 법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활성화

1) 역할과 의의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경우 손해배상, 차별행위 중지, 차별관행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행위가 소명이 된 경우에 판결 전이라도 가능하다.

차별로 인한 분쟁해결 과정에서는 가해자에게 차별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다. 권리구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이고, 손해배상은 물론 적극적 차별개선 조치까지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2) 장차법 시행 이후 장차법 관련 판례 현황¹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55건이 장차법 관련 판결이었다. 민사(행정)소송은 40건, 형사소송은 15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표> 소송 유형별 판결 현황

민사(행정)소송	형사소송	계
40	15	55

<표> 연도별 판결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민사	1	2	3	5	3	5	8	7	6	40
형사	0	1	0	1	0	1	3	6	3	15
계	1	3	3	6	3	6	11	13	9	55

10) 장차법 관련 판례 현황 분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왕, 2017' 논문을 요약 발췌하였다.

(1) 민사(행정) 판결 내용 분석

민사(행정)판결은 구제 조치에 관한 판결이 14건,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이 27건, 그 밖의 판결이 9건이 있었다. 장차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 이외의 사법·행정절차 관련 소송에서 이 법이 활용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이 하나의 법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손해배상과 기타 판결에 비하여 구제 조치의 인용율이 낮아, 법제정 당시 구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점과는 대비된다.

<표> 소송 유형, 소송 결과별 민사(행정)판결 현황

	인용	기각	각하	계	인용율
구제 조치	3	9	2	14	21.4%
손해배상	13	13	1	27	48.1%
기타	4	5	0	9	44.4%

민사(행정)사건 판례는 고용 차별, 대학의 편의제공 미흡, 놀이시설과 금융기관의 차별, 시외 이동권 미보장,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생활 미보장, 참정권 미보장, 장애인 폭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장차법의 독특한 권리 구제 수단인 구제 조치가 인용된 판결이 3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생활전반 영역에서 다양한 장애인 차별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어, ‘차별금지’라는 장차법의 취지와 목적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차별 금지 영역별 민사(행정)판결 현황

차별 금지 영역	판결 수	사건 수
고용	7	5
교육	4	4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5	13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1	10
모·부성권, 성 등	0	0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2	2
기타	1	1
계	40	35

<표> 차별금지 영역별 판례현황

영역	중분류	사건(35개)	판결(40개)
고 용	모집·채용 관련 사건	뇌병변장애인 교원 임용거부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구합12284 판결(1심)
			광주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누4361 판결(2심)
	승진 관련 사건	지자체 승진 배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구단11332 판결
		대학 교직원 보직 배제 사건(1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2599 판결
		대학교 직원 보직 배제 사건(2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2599 판결
	전보 관련 사건	청각장애인 전직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141 판결(1심)
대구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나5105 판결(2심)			
교 육	대학교 편의시설 미제공 사건(2007년)		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대학교 편의시설 미제공 사건(2014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9. 26. 선고, 2014가단3125 판결
	교육원의 면접 시 편의 제공 거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29617 판결
	일반 학급 교사의 장애 학생 부당 대우 사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재 화 와 용 역 제 공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 관련 사건	장애인용 자동차 매매 사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12. 16. 선고, 2011가합1873 판결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보험금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및 이 용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 관련 사건	지적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사건	2009나420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가합76271 판결 (1심)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나18439 판결 (2심)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3나61901 판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금지 관련 사건	청계천 접근권 미보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145 판결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장애인용 주차장 월정액 주차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15712 판결	
		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강기 미설치 사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25 판결	
		호텔의 숙박 연장 거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61574 판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 금지 관련 사건	시외 저상 버스 부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1가단472077 판결	
		시각장애인 전철 선로 추락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나39826 판결	
		시외 이동권 보장 요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와	사법·행정절차 에서의 차별 금지 관련 사건(손해배상)	지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없는 수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99509 판결
			청각장애인이 재판상에서 편의 제공이 거부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단342442 판결

참정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나2936 판결
	사법·행정절차 에서의 차별 금지 관련 사건(행정소송)	충북 음성군에서 일어난 시설 거주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구합691 판결
		서울 양천구에서 일어난 시설 거주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28434 판결
		장애인 숙박시설 건설 협의 처분 거부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생계급여 지급 거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나30909 판결
		장애급여 지급 거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10955 판결
		의족 파손 산재 보상 사건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기존 장애 산재 보상 차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38367 판결
	참정권 관련 사건	방송사 수화 화면 확대 요구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카기2448 결정
가족 가정 복지 시설 건강권 등	장애인체육 국가 대표 폭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2가합17499 판결	
	시설거주 장애인 폭행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25. 선고, 2014가합100057 판결	
기타	성희롱 입증 책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13건의 판결(11건의 사건)에서 19명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소송 당사자가 신체적 침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70%에 가까운 13명이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일부 승소의 경우, 인용되지 못한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고인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소송비용이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을 넘어서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가해자의 차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손해배상액이 차별개선 이행에 따른 비용을 초과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손해배상 인용 판결의 인용 금액 현황(단위: 원)

사건	원고	심급	손해배상 청구액	인용금액	
				전체	위자료
뇌병변장애인 임용 거부	A	1심	5,000,000	3,000,000	3,000,000
		2심	3,000,000	3,000,000	3,000,000
대학 교직원 보직 배제(1차)	A	1심	30,000,000	19,900,000	10,000,000
대학 교직원 보직 배제(2차)	A	1심	31,200,000	14,200,000	13,000,000
대학교 편의시설 미제공(1차)	A	1심	20,000,100	3,000,000	3,000,000
대학교 편의시설 미제공(2차)	A	1심	15,000,000	3,000,000	3,000,000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A	1심	5,000,000	3,000,000	3,000,000
	B		5,000,000	3,000,000	3,000,000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 여부	A	1심	5,000,000	1,000,000	1,000,000
		2심	5,000,000	5,000,000	5,000,000
시각장애인 전철 선로 추락	A	2심	15,000,000	6,089,541	6,000,000
지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없는 수사	A	1심	30,000,000	15,000,000	15,000,000
국가대표 선수 폭행	A	1심	100,000,000	25,650,000	20,000,000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A	1심	5,000,000	500,000	500,000
	B		5,000,000	500,000	500,000
	C		5,000,000	2,000,000	2,000,000
	D		5,000,000	500,000	500,000
	E		5,000,000	500,000	500,000
	F		5,000,000	500,000	500,000
	G		5,000,000	500,000	500,000
	H		5,000,000	1,000,000	1,000,000

(2) 형사판결 내용 분석

형사판결에서 장애인 피고인이 변론에서 장차법을 언급한 판결이 4건이 있었다. 2건은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쟁점이 되었다. 그 중 한 건은 가해자 지적 장애인의 변론과정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의사소통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 장애인이 피고인 형사판결

분류	사건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이 쟁점이 된 사건	지적장애인 자백의 증거 능력 부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고합519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지 의무 위반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고합136 판결
피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한 사건	무면허 운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노287 판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2374 판결

<판례> 지적장애인 자백의 증거 능력 부인 사건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고합519 판결
판결 요지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일반 건조물 방화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신뢰 관계인 동석 등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사법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진술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례>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지 의무 위반 사건

사건 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고합136 판결
판결 요지	<p>후천적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이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조력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부적법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p> <p>법원은 피의자가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이 조항에서 수사기관이 따라야 할 절차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p>

가해자가 장차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이 4건,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 1건이었다. 이상 5건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판결이 있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에서 위와 같은 사건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이 장차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장애인이 피해자인 형사판결

분류	사건	판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	강원도 원주시 시설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7. 4. 선고, 2013고단20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노554 판결(2심)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188 판결(3심)
	경상북도 구미시 시설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2. 15. 선고, 2014고합70-120 판결(1심)
		대구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755 판결(2심)
		대법원 2015. 9. 10. 선고,

	강원도 홍천군 시설 사건	2015도10541 판결(3심)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3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7. 15. 선고, 2015노37 판결(2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050 판결(3심)
	가평군 시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고단3815 판결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 사건	개 사육장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1999 판결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28명이었는데, 장차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는 없었다. 모든 피고인이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기소되었으며, 경합한 범죄는 폭행, 감금, 사기, 준사기, 횡령 등이었다. 장차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가 없는 이유는 제49조의 악의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경합하고 있는 다른 범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 유죄판단과 양형에 장차법이 적용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28명의 피고인 가운데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명에 불과하다. 차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피해자가 장애인인 형사판결의 적용 법령과 양형

사건	피고인	적용 법령	양형	
			1심	2심
원주시 시설 사건	A(시설장)	사기, 상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체 유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폭행	3년 6월	3년 6월
구미시 시설 사건	A(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상습 중감금, 업무상 횡령, 사기, 범인 도피 교사	7년	3년
	B(시설장)	상습 중감금, 업무상 횡령	3년	3년(4년)
	C(사무국장)	상습 중감금	2년 6월	2년 6월 (4년)
	D(부장)	상습 중감금	3년	3년(4년)

	E(사무원)	중감금	2년(3년)	2년(3년)
	F(과장)	중감금(1심) / 감금(2심)	2년(3년)	300만 원
	G(간호사)	중감금(1심) / 무죄(2심)	6월(2년)	무죄
	H(생활교사)	상습 중감금(1심) / 중감금, 감금(2심)	2년(3년)	1년(2년)
	J(생활교사)	상습 중감금(1심) / 중감금, 감금(2심)	1년(2년)	선고유예
	K(생활교사)	중감금	6월(2년)	선고유예
	L(생활교사)	상습 중감금(1심) / 감금(2심)	2년(3년)	1년(2년)
	M(생활교사)	상습 중감금(1심) / 중감금, 감금(2심)	2년(3년)	8월(2년)
	N(생활교사)	중감금, 폭행(1심) / 감금, 폭행(2심)	1년(2년)	500만 원
	O(생활교사)	상습 중감금(1심) / 감금(2심)	1년(2년)	500만 원
	P(생활교사)	중감금(1심) / 감금(2심)	6월(2년)	300만 원
	Q(생활교사)	상습 중감금(1심) / 감금(2심)	2년(3년)	500만 원
홍천시 시설 사건	A(시설장)	업무상 횡령, 유기치사, 사기, 감금, 유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1심) / 업무상 횡령, 유기치사,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2심)	8년	5년
가평 시설 사건	A(시설장)	사기, 감금	2년(3년)	-
	B(사무국장)	사기, 감금	2년(3년)	
	C(간호팀장)	감금	1년(2년)	
	D(생활교사)	감금	6월(2년)	
	E(생활교사)	감금	6월(2년)	
개 사육장 사건	A(고용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6월(1년)	-
	B(고용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6월(1년)	
	C(고용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1년(2년)	
	D(고용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1년(2년)	

*양형의 괄호 안은 집행유예 기간

3 장차법 시행 전·후 판례 비교 분석

(1) 장차법 시행 이전 판례

장차법 시행 이전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 근거와 논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와 배려의무 등 해석상의 법 이론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판례는 뇌병변 1급 장애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거절사건(2004년 선고)을 들 수 있고, 소극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판례는 청계천 이동권 청구소송(2007년 선고)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판례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보험회사가 뇌병변 1급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 위법성을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구체적·개별적 장애상태 및 정도와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보험인수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판례> 뇌병변 1급 장애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거절 사건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판결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승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구조에 비추어 그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호영역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 승낙거절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자(피보험자)의 구체적·개별적 장애상태 및 정도와 그가 가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1등급(이는 피고가 가진 장애등급분류표상의 장애등급과는 그 분류의 목적·방식·내용이 상이한 것이다)에 해당하고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공통심사 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것은 그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판례에서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8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에의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적,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극적 판단을 내렸다.

<판례> 청계천 이동권 청구소송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법 2007. 11. 22. 선고 2006가단 159530판결
판결 요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으로부터 장애인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에의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적,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인들이 편의 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참여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헌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 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계천의 복원공사는 2005. 9. 30. 경 완성되었고,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2006. 1. 27.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부칙 제1조),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의 발효 당시 이미 완성된 사실에 관하여 그 법률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배려의무 등 해석상 법이론

장차법 시행 이후 제2차 경남대 사건에서 장애인 교육시설 접근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장차법 시행 이전에도 법원은 송실대 사건(2002년 선고)과 제1차 경남대 사건(2008년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근거는 배려의무 등 해석상 제시되는 법 이론이었다.

송실대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와 장애인 학생 사이에 성립한 일종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 대학은 원고인 장애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어, 장애인 학생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고, 학교의 배려의무 위반으로 장애인인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정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학교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판례> 송실대 장애인 교육시설 접근권 사건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법 2002. 7. 26. 선고 2001가단76197판결
판결 요지	피고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지원한 원고에 대해 송실대학교 입학허가 결정을 하였는 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p>사이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어, 원고가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중략) 원고의 장애 정도, 피고의 위와 같은 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p>
--	--

법원은 제1차 경남대 사건에서, 피고인 대학은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례> 제1차 경남대 장애인 교육시설 접근권 사건

<p>사건 번호</p>	<p>창원지방법원 2008. 4. 23. 2007가단27413판결</p>
<p>판결 요지</p>	<p>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p> <p>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스스로 경남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중략) 원고는 피고의 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불편 및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중략)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p>

하지만 법률 일반 조항이나 법 이론에 근거한 판단은 담당 판사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나 소신에 따라 편차를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이나 교육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관점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 이행과 시혜 또는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장차법 시행 이후 판례

■ 정당한 사유에 비례원칙과 같은 엄격한 기준 제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등 다른 차별관련 법률에서는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직접차별로 보지 않는 반면, 장차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차별로 보지 않고(제4조 1항 1호), 이 정당한 사유 또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나 사업 수행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4조 3항 1,2호). 또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에 비례원칙¹¹⁾과 유사한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에버랜드가 지적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사건(2015년 선고)에서 법원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 거부 조치는 지적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목적에서는 타당하다고 하여도 부분적인 제한이 아닌 일률적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장차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및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신속한 차별개선을 위해 차별이 해소되기 전까지 매일 일십만 원의 간접 강제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판례> 지적장애인 에버랜드 이용거부 사건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9. 7. 선고 2014가합593279판결
판결 요지	<p>- 차별행위의 여부 (생략)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중략)</p> <p>3) 안전성검사 결과 등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p>

11)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침해가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공익목적 달성에 법적으로나 사실상 적합하고 유효한 수단을 선택(적합성의 원칙)해야 하고, 그렇더라도 개인의 권리침해가 가장 최소로 이루어지는 수단을 선택, 행사(필요성의 원칙)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에 비례(상당성의 원칙)해야 한다는 의미다.

	<p>여</p> <p>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그 차별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중략)</p> <p>②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더라도 유기기구의 이용이 일률적으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나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거부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중략)</p> <p>- 손해배상책임</p> <p>원고들을 비롯한 지적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당초 지적장애인들의 이용을 전면 금지한 이 사건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보호자의 동승을 조건으로 지적장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지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피고가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금지하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손해배상 액수는 차별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들의 경우 각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p> <p>- 적극적 조치 청구에 대하여</p> <p>(중략) 아울러 이 사건 유원시설의 규모나 운영형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태양이나 경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기재 내용을 위와 같이 신속하게 수정하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1일마다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매일 100,000원으로 정한다.</p>
--	--

■ 편의제공 미이행을 차별행위로 규정

장차법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미이행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로 모든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다.

시외버스 및 장거리 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한 사건(2015년 선고)에서 법원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버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 첫 판결이자 두 번째 차별 시정조치이다. 법원은 버스 1대당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행정청에 명령할 수 없다고 하거나,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행정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장애인들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는 없다면서 행정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판례> 시외.광역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청구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차별구제)
판결 요지	<p>위 법에서 위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 또는 불이행시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의무규정만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곧바로 위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p> <p>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피고 F은 시외버스에 관하여, 피고 G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관하여, 원고 A, B, C가 위 각 유형의 버스를 승하차하는 경우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원고들에게 정당한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p> <p>정당한 사유로서 해당 편의가 장애유형, 정도, 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대상 시설 등의 구조변경 또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우리나라에는 없고 해외에만 있는 시설이나 설비로서 그러한 시설이나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편의제공으로 야기되는 다른 고객들의 편견이나 두려움, 특히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은 장애인을 분리·배제하지 아니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상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p>

■ 적극적 구제조치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구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전배상 청구권을 원칙적 구제수단으로 삼는데 비하여, 장차법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규정되어 있는 법원의 강제명령(injunction)제도를 도입한 적극적 조치 조항(제48조 제2항)을 두고 있다.

일종의 임시구제조치 또는 행정법상 가구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법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낯선 제도이다. 장차법 시행 이후 14건의 구제조치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3건만을 인용했다. 앞선 에버랜드의 지적 장애인 놀이시설 이용 거부 사건이나 버스회사에 대한 승강장비 설치 명령, 아래의 면접시험 과정에서의 편의지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개선 명령은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에서 차별개선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뇌병변 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6년 선고) 1심 판결이후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임용고시 공고문이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보완대책의사소통(AAC)을 지원하고 면접자 장애유형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고지하는 등 편의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담기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판례> 뇌병변 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사건 번호	광주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누4361판결
판결 요지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 채용과정을 비롯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시험실시 기관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이 사건 면접을 시행함에 있어 응시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응시자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간의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구 사용의 허용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응시생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교육공무원 법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하여 위법하다.</p> <p>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차별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4조 제3조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p>

	<p>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허용한 스케치북들만으로는 이 사건 면접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략)</p> <p>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면접시험의 위법성을 제거한채로 다시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상당하다.</p>
--	---

(3) 장차법 전·후 판결 경향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선언적 규정으로 평가받았던 장애인복지법 제8조와 배려의무 등 해석상 법 이론이 차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였다. 그나마 소수 판사의 시혜적 관점에서 내려진 판결이었다. 반면 장차법 시행이후 판례에서는 장차법의 특징적 요소와 그 해석이 판결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비례원칙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생활전반의 편의제공 미이행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용률은 낮지만 차별개선을 명령하는 적극적 조치 판결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장차법 제49조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 차별의 악의성 충족요건을 완화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집단소송과 같은 절차적 제도를 마련해 차별개선에 실효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표> 장차법 시행 전·후 판결 경향 요약

구분	특징적 요소
시행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성 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배려의무등 해석상 법이론 ▶ 일부 판사의 시혜적 관점에서 차별행위 인용
시행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제공 미이행을 차별행위로 규정 ▶ 적극적 구제조치 명령 등장 ▶ 직접 차별로 보지않는 기준을 엄격히 해석 ▶ 형사사건 적용 한계(제49조) ▶ 차별개선 실효성이 부족한 손해배상 판결

4) 개선방향

(1)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제48조 2항) 확대

법원 판결에서 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을 강제하는 적극적 조치 인용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앞선 판례분석에서 보았듯이 이 권리구제 수단은 차별피해자 입장에서 판결 전에 임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적극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혜택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미친다는 면에서 차별개선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표소송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판례분석 결과 재판부는 48조 2항을 임의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 스스로 차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재량권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용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 입장에서 적극적 조치 청구취지를 쓰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 구제 수단에 대한 법원 인식수준은 높지 않다. 법원은 내부세미나를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복지부는 적극적 조치 판결의 의미를 홍보하고 법무부, 공익변호사 그룹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2)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유용한 판단기준 명문화

법원이 인정한 유용한 판단기준, 즉,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장차법에 명문화(제4조 3항 보완) 함으로써 타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선고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4조(차별행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하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신설)**

(3) 제49조(차별행위) 악의성 충족요건 완화

장차법 제49조는 형사소송에서 다른 범죄와 경합해서 활용되고 있지만, 가해자가 장차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경우가 없고, 재판부의 유죄 판단과 양형에 장차법을 적용한 사례도 없었다. 장차법이 형사판결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제49조만으로 형사 기소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차별의 악의성 충족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의 고소·고발과 검사의 기소단계,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제49조 활용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삭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4) 차별피해자 소송지원 기금 마련

신체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소액이다. 반면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의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가 복잡하게 소송을 할 유인이 없다. 피해자는 소송을 기피하고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차별 피해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차법 제8조는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를 보완해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 외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일환으로 소송지원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위원회에서 개별 소비자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¹²⁾한 것에 이어, 19대 국회부터 소송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2017. 2. 21.)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12) 공정위의 개별 소비자 소송 지원은 2012. 1.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의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담합피해 소송을 1억원 한도로 지원한 것이 최초 사례이며 이후 소비자 소송지원사업을 수행할 소비자단체를 모집해서 피해 소비자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표> 계류 중인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 주요내용

○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근거 마련 및 사업 구체화(안 제32조의2 신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 하는 사업을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및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함.

○ 정부 법안

제32조의2(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및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2.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3.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4.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분쟁조정 및 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5.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동의를결에 따라 사업자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정부는 재단이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재단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재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 사업 연도 2월 말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⑨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집단구제제도 도입

장애인 차별행위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소액이라 피해자의 소송유인이 없다. 집단적 분쟁의 1회적 해결 방식이 요구된다. 집단소송과 같은 절차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장차법은 제 47조에서 차별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배분하고 있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입증책임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집단소송제도, 단체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국내 법 감정과 수용 가능한 수준에 맞게 도입해 차별행위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집단피해구제 방식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증권분야 집단소송이 있다.

첫째, 소비자단체소송과 같은 장애인단체소송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법률이 정한 단체가 다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고(소비자)의 손해배상이나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아닌 사업자의 특정행위 금지와 같은 보편적이고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어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장애인 분야의 경우 장애인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서 소비자 분야보다는 단체소송이 활발할 수 있다.

둘째, 변형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제안한다. 책임인정(차별행위 금지 또는 중지) 선까지는 장애인단체에게도 원고적격을 부여하되,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개별 피해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소송규모로 인한 집단소송(opt-out)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징벌적손해배상의 효과가 있다는 점, 장애인인권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가 소송을 주도하면 피해자 소송참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소송 모두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피해자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집단적 분쟁의 1회적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IMF의 권고에 따라 증권분야에만 우선적으로 도입된 집단

소송제도로서, 50인 이상의 같은 피해자가 모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효력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기업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점, 소제기에 따른 승소가 불확실한 반면 피해자가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은 많고, 소송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등으로 인해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제기된 집단소송 건수는 9건에 불과하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도 유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분야와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형태로는 옵트-인(opt-in)방식, 옵트-아웃(opt-out)방식 등이 있다.

▶ 옵트-인(opt-in)방식의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재판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은 약하겠지만, 소송에 참가한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되어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소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참가를 하지 못하는 자의 피해자 구제는 미진하다는 단점이 있다.

▶ 옵트-아웃(opt-out)방식의 집단소송은 판결효력의 범위를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모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권리구제에 용이하고 불법행위의 반복억제와 예방효과가 있다. 다만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체계나 처분권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패소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 더구나 소비자 분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의 증권분야 집단소송도 이 방식이다.

IV. 결론 및 제언

장차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책수립과 개선,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시정과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다른 정부부처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주도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능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에 장애 당사자 또는 장애인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참여시켜 차별시정 권고는 물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하 및 기각요건 강화와 정책 개선 및 차별시정 권고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선하고, 조사관 확충으로 증가 하는 차별 진정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법무부 차별시정명령제도 활성화

법무부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 요건(제43조)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법무부의 차별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요구된다.

3. 법원의 손해배당 및 구제조치 판결 활성화

법원, 법 집행기관, 법조인 대상으로 적극적 구제조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판결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인정한 유용한 판단기준을 명문화 해 타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용되도록 한다. 손해배상이 차별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장애인단체소송, 변형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차별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제49조의 차별의 악의성 충족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 고소 및 고발, 검사의 기소 단계, 판결과정에서 활용가능성을 제고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7.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자료집

김재왕(2017), 「장차법 관련 판례 현황 분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20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 자료집」

법무부(2008),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최초 시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부 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

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들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

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

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④「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지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체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3978호,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자료의 저작권은 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용이 가능하나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www.ableinfo.co.kr

0726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502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Tel. 02)833-3097 Fax. 02)833-3093, E-mail. ableforum@hanmail.net